

2008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2008년중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하였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금융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법률 제·개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설치하여 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관련법령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원화 유동성 비율 산출대상을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의 유동자산·부채로 한정하고,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바젤 I 과 II 방식중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병행산출기간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 금융감독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정비하였다.

I. 머리말

II. 금융위원회 설치

III. 자본시장통합법 관련법령 정비

1. 금융투자상품 등의 분류기준 구체화
2. 겸영 허용 및 이해상충 방지

IV. 금융규제 개혁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1. 금융산업의 효율성 강화
2. 금융하부구조 개선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 증진
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V. 평가 및 향후과제

I. 머리말

2008년 초에 출범한 신정부는 정책환경과 정부 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을 축소하였다. 재정·산업 등 경제정책을 다루는 조직을 단순화하고 금융관련조직도 종래의 금융감독기능에다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추가한 금융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어서 금융규제 완화와 감독행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발족하여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면서 금융규제 개혁보다는 이례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유동성 경색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의 규제를 보완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하에서는 2008년중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금융법령 정비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II. 금융위원회 설치

2008년 2월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정책기획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함으로써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 등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하였다.

정부조직 개편 결과, 기획재정부는 재정·화폐·외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¹⁾는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과 금융기관 인허가·제재 등의 감독정책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은 감독집행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1)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금융청을 모델로 삼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재무부가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별도의 감독기구가 감독정책을 담당하는데 비해, 일본은 통합감독기구인 금융청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한다.

〈표 1〉 경제·금융부처 소관사무 변경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부처 통합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고·세제 등 주요기능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금융정보 분석
소관 사무	정책기획·조정 및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금융정책, 감독정책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의 관련업무 및 감독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다만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위탁한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표 2〉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담당기구

	정부조직 개편 전	개편 후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정책 ¹⁾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집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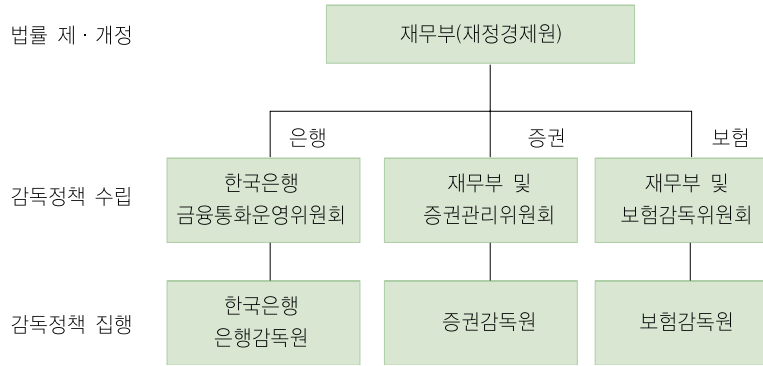
주 : 1) 금융기관 인허가 및 제재 등

〈참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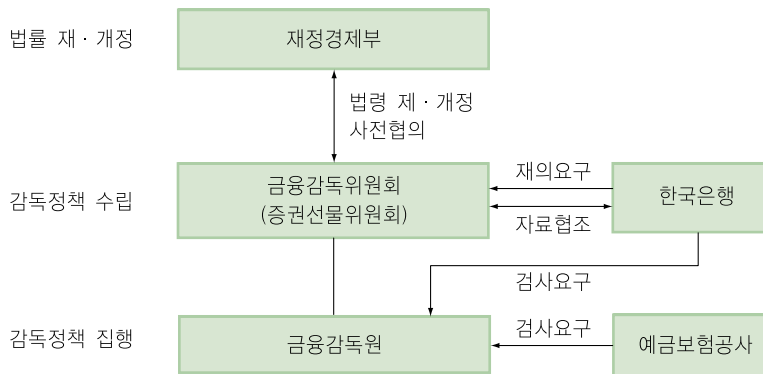
199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종별로 각기 다른 금융 감독기구를 두는 분산형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였다. 은행업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포괄적인 감독정책 수립권한을 보유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검사기능을 수행하였다. 증권업의 경우 재무부(재정경제원)와 증권관리위원회가 감독정책 수립권한을 공유하고 증권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보험업의 경우 재무부(재정경제원)가 주로 감독정책을 담당한 가운데 보험감독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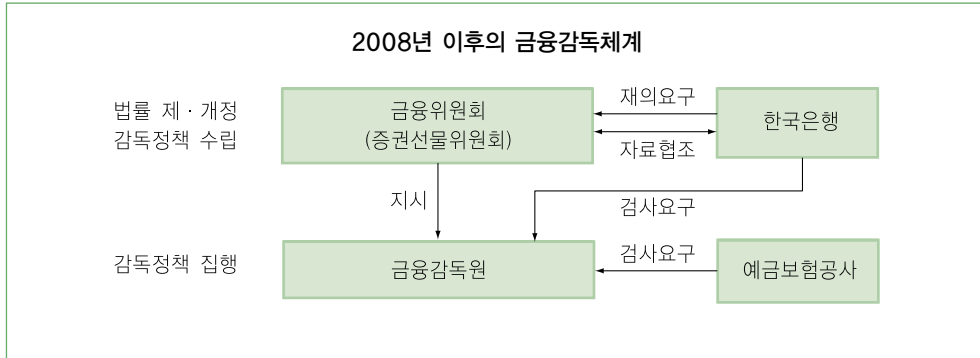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금융감독 책임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해 금융업권별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였다. 즉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과 금융기관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감독정책 수립·집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였다.

1998~2007년의 금융감독체계



한편 2008년 출범한 신정부는 금융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법률 제·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금지하였다.



Ⅲ. 자본시장통합법 관련법령 정비

1. 금융투자상품 등의 분류기준 구체화

정부는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일괄 정비하였다(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09.2.4).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기관별 규제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율하는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였다. 즉 규제의 대상을 투자자·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에 따라 분류하고,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를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에 따라 달리 하였다.

〈표 3〉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체계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투자자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위험인수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 대신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

국가·한국은행·금융기관 등이 법정 전문투자자인데,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주권상장법인·개인 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활동이 자유로운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전문투자자	전환가능성
		전문투자자	
국가	국가	불가능	불가능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기관	은행, 금융지주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	기금, 개인(전문투자자로 신고한 개인으로서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원 이상, 투자경험 1년 이상) 등	가능	가능
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종래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던 금융상품의 개념을 투자성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투자성이란 이익획득·손실회피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 총액이 그로부터 회수되는 금전 총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원본손실위험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금·대출·보험 등에도 원본손실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칫 모든 금융상품이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 각종 세금·수수료 등을 원본손실의 개념에서 제외하였다.

〈표 5〉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상 투자성¹⁾ 판단기준의 조정항목

회수금액에 가산하는 항목	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
투자결과에 포함되지만 실제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해지 수수료, 세금 등의 금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실제투자에 활용되지 않은 판매수수료, 보험계약상 사업비 등의 금전
거래상대방의 파산등에 따른 손실	

주 : 1) 회수금액보다 지급금액이 큰 경우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의 분류

구분	정 의	포괄범위
채 무 증 권	지급청구권 표시 증권	국채, 사채 등
지 분 증 권	출자지분 표시 증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
수 익 증 권	신탁 수익권 표시 증권	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의 발행국가 밖에서 발행하는 증권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투자계약증권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민법상 조합·상법상 익명조합을 활용한 간접 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등
파생결합증권	외생적 지표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주가연계증권(ELS), 신용연계증권(CLN) 등

그러나 이러한 단순 분류에 의한 경우 현재 은행·보험회사 등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서 은행·보험회사 등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구분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령에서는 은행·보험회사 등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전에 영위하던 범위내에서만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즉 은행·보험회사의 국공채 창구판매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증서를 국공채와 사채로 구분하고,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집합투자증권과 기타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는 증권회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는 주로 은

행이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권기초, 통화·이자율기초, 기타로 장외파생상품을 삼분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금융투자상품 분류기준은 금융투자업의 인가기준과 연계되어 있다.

〈표 7〉 금융투자상품 인가단위

분류 기준		분류 목적	
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은행·보험의 국공채 청구판매 계속 허용
		사채, 투자증권	
	지분	집합투자증권	은행·보험·증권·증권금융 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계속 허용
		기타 지분증권	
RP대상증권		은행·증권사 등이 취급하는 대고객 RP에 국공채, 사채, 공모 ABS·MBS 등의 편입 계속 허용	
장내 파생	주권기초	증권사들의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거래 계속 영위	
	기타 장내파생		
장외 파생	주권기초	증권사들의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거래 계속 영위	
	주권외기초	통화·이자율기초	은행들의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속 영위
		기타 장외파생	

금융투자업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투자자문·투자일임업 등 6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보험회사 등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영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업에 있어 은행·보험회사 등의 경영범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stand still)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단위를 42개로 세분하였다.

이와 같은 업종의 세분화는 은행 등 비금융투자업자의 경영범위를 제한하는데 더하여 특정업무에만 특화하는 전문금융투자업자의 신규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업의 경우 모든 형태의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8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증권펀드 등 특정한 자산운용에 특화할 경우 20억원 또는 40억원의 자본금만으로 집합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표 8〉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자기자본(억원)	
투자매매업	인수 포함	증권	채무증권	500	
			국공채	200	
				75	
			지분(집합투자증권 제외)	250	
			집합투자증권	50	
	인수 제외	증권	채무증권	200	
			국공채	80	
				30	
			사채	40	
			지분(집합투자증권 제외)	100	
			집합투자증권	20	
			RP대상증권	60	
	인수	증권	채무증권	사채	60
	장내파생	증권	채무증권	100	
			주권기초	50	
장외파생			주권기초	900	
			주권외기초	450	
			통화·이자율기초	450	
통화·이자율기초	180				
투자중개업 (RP중개)	증권 (증권)	채무증권	30		
		지분(집합투자증권 제외)	5		
		집합투자증권	10		
		10			
	장내파생	주권기초	20		
		10			
	장외파생	주권기초	100		
		주권외기초	50		
		50			
		통화·이자율기초	20		
투자중개업 (ECN)	증권	지분(집합투자증권 제외) 상장주권	150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증권	채무증권	30		
집합투자업	모든 펀드	증권펀드(MMF포함)	80		
		부동산펀드	40		
		20			
		특별자산펀드	20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금전 신탁	250		
		130			
		금전제외 신탁	120		
		부동산 신탁	100		
투자자문업	모든 금융투자상품	5			
투자일임업	모든 금융투자상품	15			

2. 경영 허용 및 이해상충 방지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업무의 외부위탁(outsourcing)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경영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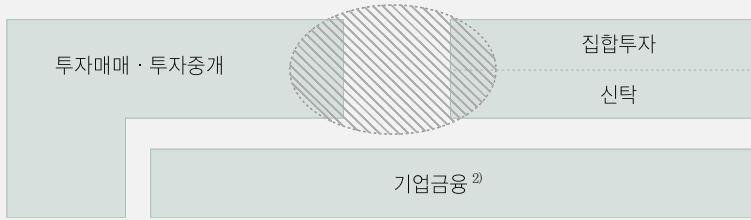
즉 투자자예탁금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인수 및 M&A 업무수행을 위한 신용공여, 대출중개, 증권 및 장외파생 매매업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의 경영도 허용하였다. 한편 금융투자업자는 보험대리점, 외국환, 전자자금이체 등의 경영도 가능한데,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아닌 보험업법, 외국환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

〈표 9〉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금융투자업자	경영업무
자본시장 통합법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공단체 업무대리 •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인수, M&A 업무 수행을 위한 신용공여(인수 포함 증권투자매매업자에 한정) • 대출중개업(채무증권 매매·중개업자에 한정) • 지급보증업무(인수 포함 증권투자매매업자 및 장외파생매매업자에 한정) • 원화표시 CD 매매·중개(채무증권 매매·중개업자에 한정) • 증권 대차거래(해당 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자에 한정)
기타법령	해당 법령상 금융투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업무 (보험업법) • 담보부사채신탁업 (담보부사채신탁업법) •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 전자자금이체업무 (전자금융거래법)

또한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과당매매·이익제공·탈법행위 등을 금지함과 아울러 기업금융, 투자매매·투자중개, 집합투자·신탁업 등 세 영역간 정보교류의 방어벽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 기업금융정보 취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 등도 공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림 1〉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대상업무¹⁾



주 : 1) 실선 : 정보교류 차단

점선 : 통합운용 가능

음영처리된 점선타원은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으로서 기업금융의 취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 좌우의 투자매매 · 투자중개 및 집합투자 · 신탁과의 통합운용은 가능

2) 기업금융 : 인수, M&A 중개 · 조언, 모집 · 매출주선, 사모투자펀드 운용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고유자산 및 운용재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동 금액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IV. 금융규제 개혁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민간주도에 의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출범 직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발족(2008.4.22)되어 금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1,300여건의 규제 내용을 심사하고 업무영역, 지배구조, 영업행위, 진입 · 퇴출, 공시, 신용정보 등에 걸친 개선방향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개혁, 감독행태 개선 및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등의 과제들을 선정하고 법률 및 감독규정의 제 · 개정 작업을 실천해 나갔다.

또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국내 경기의 급격한 하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1. 금융산업의 효율성 강화

정부는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합리화 조치를 추진하였다.

먼저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시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돈육선물 등 일반상품 선물의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상품 선물의 현·선물 연계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선물거래법」 시행 2008.4.15). 아울러 선물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업자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를 구체화하였다(「선물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4.30). 또한 은행의 파생상품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 파생상품의 위험회피 거래목적의 제한을 폐지하고(「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시행 2008.7.25),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기준을 개선²⁾하였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3.31).

일부 금융기관의 영업범위도 확대되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확대하고(「중소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8.12.17),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및 대외채무보증 취급범위를 확대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8.6.20).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중개·주선업무를 허용하는 반면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08.10.10).

한편 외국환거래 자유화 차원에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³⁾되어(「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08.6.2)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유화 되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파생거래를 허용하는 등 외국환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08.7.25).

2. 금융하부구조 개선

정부는 여신전문회사의 자산건전성 강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금융하부구조 개선에 노력하였다.

2) 기존에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던 신용파생상품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하였다.

3) 기존의 미화 300만 달러(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취득금액 한도를 폐지하였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 내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하여 전업카드회사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과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신용카드 겸영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⁴⁾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08.2.11).

한편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고⁵⁾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조사처리절차를 강화하였다(「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시행 2008.11.27). 또한 금융기관 임원이 해임 전에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요건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해임·면직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요건을 강화하였다(「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 2008.3.14, 「선물거래법」 시행 2008.3.28).

한편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보유주식 처분시한(5년)을 폐지하고(「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08.3.28),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도록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배분기준을 합리화하였다(「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9.26).

또한 가계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부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대상에 추가하였다(「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12.3).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발행 자기앞수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 결제목적 별단예금을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편입하고(「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08.1.17), 자기앞수표의 지급불능시 동 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장

4) 전업카드회사의 미사용 약정충당금의 경우 신용환산율을 반영한 회원의 전체 미사용약정액에 대해 1.5~100% 범위에서 건전성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정상(1 → 1.5%), 요주의(12 → 15%)에 대해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5) 1년 이내 다시 위반시는 기본부과율(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 - 100%, 2등급 - 80%, 3등급 - 60%, 4등급 - 40%, 5등급 - 20% 등 모두 5단계)의 2단계 상향 조정, 2년 이내 다시 위반시는 기본부과율의 1단계를 상향 조정한다.

하도록 하였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8.6.25).

아울러 국내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매수·대량보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외국주권·외국주식에탁증서 등을 추가하였다(「증권거래법」 시행 2008.3.14).

금융이용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제출방식에 기존의 서면·공인전자서명방식 이외에 신용카드·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비밀번호입력방식을 추가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3.22), 보험료·통신요금 결제대금 추심이체 동의방식에 현행 서면동의 외에 녹취방법 등을 추가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08.7.9).

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독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금융기관 해외사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해외 간접투자기구(mutual fund) 비상근임원 겸직을 허용하고, 해외자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해외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간접투자기구 운용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8).

또한 정부는 예금보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율한도(0.5%) 적용시한을 201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예금자보호법」 시행 2008.9.26), 예금자보호 대상에 외화예금을 추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11.26).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간 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유동성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을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의 유동자산·부채로 변경하였다(「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08.10.31).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자산 증가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12.29). 그리고 신BIS기준 도입을 위한 이행조치로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바젤 I 과 바젤 II 방식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병행산출기간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였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12.29).

또한 주택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한 가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위하여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확대⁶⁾하였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6.3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6.30). 특히 지방 건설경기의 악화를 감안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은행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08.7.21)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하였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08.10.3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08.11.7).

V. 평가 및 향후과제

2008년에는 금융감독체계가 크게 변화된 가운데 금융규제 논의도 진전되었으나, 정부는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규제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8년 2월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 수립권한 이외에 법률 제·개정 권한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통합감독기구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일본만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1997년 이전 재무부(재정경제원)가 증권·보험 등 비은행업에 대해 법률 제·개정 권한과 포괄적인 감독정책 수립권한을 함께 보유했던 시기보다 정부와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 집중이 강화되었다.⁷⁾

한편 하반기 들어서는 은행 소유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원칙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9월에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를 계기로 이에 관한 논의가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동 법률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주주·은행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인(동일인) 개념에서 제외하는(「은행법 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08.12.3) 등의 미세한 보완만 이루어졌다.

6) 최대 80%에서 85%로 확대되었다.

7) IMF에 의하면 전세계 40개 주요국 중에서 20개국의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조속한 수습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통화신용정책 운용방안 마련과 이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현행 금융규제가 가지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해소를 위하여 BIS자기자본규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금융규제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시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흡했던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감독기구에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감독체계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approach) 및 금융안정기능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 신상준, 조사역 오종민)